

(문) 저는 고층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저의 빌딩에 대면 1~2회 安全點檢을 實施하여 주시는 賽協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安全點檢 通報 內容中 “11층이상의 防火區劃 設置와 스프링크라 설치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문의하오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먼저 저의 協會 安全點檢業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對하여 感謝드립니다. 防火區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화재시 피해를 국소적으로 줄이기 위한 事前對策으로 특히 11층이상의 고층부분에 對하여는 건물내의 화재하중에 따라 구획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①항제3호에 의하면 “11층이상의 모든 층(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m^2$  이하인 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거실의 바닥면적  $100m^2$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準不燃材料로 할 경우에는 그 居室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不燃材料로 할 경우에는  $500m^2$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一般 11층 이상의 高層建物에 對한 自動消火設備인 스프링크라 消火設備設置에 관하여는 소방법시행령 제17조제①항제 7호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高層建物의 11층이상의 부분 중 建築法施行令 제96조제①항제 3호 규정에 의하여 防火區劃이 되지 아니한 건물에는 스프링크라 설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建物內의 내장재가 가연재로인 경우는 11층이상의 부분을 거실의 바닥면적  $100m^2$  이내마다, 불연재로일 경우에는  $200m^2$  이내마다,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5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되며 스프링크라 소화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하여 됩니다.

그러나 기존 고층건물에 있어서 임대사무실등 거실을 좁은 면적으로 구획하기는 전물의 구조상, 관리상 매우 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스프링크라 소화설비와 같이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함이

等으로 탱크밖으로 위험물이 흘러 인근에 까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탱크주위에 축조하는 제방으로서 同一敷地內 隣接하여 設置한 2個以上의 屋外貯藏Tank주위에 設置하는 防油堤의 容量은 그 중 가장큰 탱크용량의 50%에 다른 탱크 용량합계의 10%를 가산한 容量으로 上으로 設置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발생하는 大型의 重油流出事故를 미루어 보면 보다큰 용량의 방유제가 要求되므로 該當탱크全容量의 110%以上의 容量으로 設置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防油堤의 構造는 鐵筋콘크리트, 鐵骨鐵筋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設置하되 그 強度에 있어서는 從前에 危險物이 靜的으로 가득차 있는 상태의 荷重에 견딜수 있는 강도의 構造로 設計하게 되어 있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特定屋外貯藏탱크를 收納하는 것에서는 危險物이 動的으로 가득차 있을 때의 荷重을 견딜수 있는 것으로 強化하는 傾向이 있다는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防油堤 補完 方法으로서는 ① 既設置된 防油堤를 개수할 경우 탱크의 總容量이  $2000m^3$ 未滿에 있어서는 防油堤 最上端을 延張설치 할수 있으며, ② 2차防油堤를 設置하거나 ③ 既設 防油堤를 補強 및 新築하는 方法 等이 있습니다.

## 相談코너

### 安全點檢

바람직 하며,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방화구획설치는 그 면적의 3배까지 완화됨) 고층부분에 있어서는 내장재를 불연화하여 화재하중을 줄여 유사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문) 危險物 屋外탱크貯藏所 施設基準中에서 防油堤의 容量, 構造防油堤의 補完方法에 對하여 문의하오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防油堤란 屋外Tank저장소의 화재시에 Boil-ovens 및 탱크파손

李京九  
點檢部 課長

(문) 저는 대구에서 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올해에 와서 보험 계약을 체결 한 후 약관을 보고 전년도와 달라진 제11조 손해방지 의무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改正된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손해방지 의무에 대하여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보험약관 제12조는 손해발생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힘써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경감 또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공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약관에는 “보험자가 손해방지 비용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로 변경 되었다. 이와 같은 약관은 상법 제680조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 1. 손해방지의 내용

보험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이란 사고발생 시점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사고예방 또는 사후에 취하는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손해방지의 내용은 화재의 발생 이후에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행위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소화작업을 하고 연소방지를 위하여 다른 재물을 희생시키든가, 인부를 고용하여 가재도구를 긴급 피난시키든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손해방지 의무자

상법과 약관에서는 손해방지 의무자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의무자가 되는 이유는 계약의 당사자로 신의성실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피보험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손해방지 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3. 손해방지 및 경감 비용의 요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이면

되어있으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게 되어 있고 상법에서는 손해방지 비용은 무제한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때에는 기본 법규에 미달하는 약관은 법 해석으로 보아 실효성이 미달하기 때문에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의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

상법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은 민법의 의무불이행의 이유에 의하여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계울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규제로써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6. 손해방지 비용의 구체적인 실례

- 가) 화재 발생시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에 따른 약제 충진비용
- 나) 방화사 사용에 따른 모래값, 인건비

- 다) 스프링크라의 헤드 교체비, 수도물값, 전기료
- 라) 긴급 피난을 위한 인부 고용 시 인건비
- 마) 이 웃의 도움에 따른 항응비
- 바) 연소방지를 위한 재물의 파괴 및 재물의 가액 등으로 구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손해복구 견적서 제출시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재집  
<業務部·課長>

## 相談코너

## 特 殊 保 險

됩니다. 그러나 지출된 손해방지 비용이 손해방지나 경감에 필요하여 사용된 것이였지만 사실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와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으로 아니였지 만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된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이나 약관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으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4. 손해방지 비용의 부담한도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